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41호 2015년 10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자 라00076 발행일 2015년 10월 발행(41호) 편집인 노재화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두사
연구원소식
최신건설정보
발간물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회장 전 정 배 입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가을이 무르익는 결실의 달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이 하나하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국가중추산업으로 예나 지금이나 생산유발과 일자리창출 등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최근 건설경기는 정부의 SOC예산축소 및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주택건설경기 회복 등으로 긍정적 전망을 바라보고

있으나, 저가경쟁속에 단순시공위주의 단기적 사업에만 머문다면 광범위한 산업연계로 이뤄진 전방산업인 건설산업의 침체로 이어져 국가전반산업이 위축되고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건설산업은 시공위주의 산업이 아닌 첨단지식산업으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타 산업들과 연계한 건설 R&D에 적극 투자를 하고 정부 또한 건설기술개발관련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겠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SOC투자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반드시 짚고 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소규모하수관거공사, 빗물펌프장 및 저류지 확충공사, 보행환경 및 위험도로개선공사 등 낙후된 지방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SOC, 안전SOC에 우선투자를 활성화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경제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인들은 지난 세월호 참사,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를 통해 건설산업안전을 위한 반면교사를 삼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막연한 갑과 을의 수직적 먹이사슬 구조속에서 안전대책을 배제한 저비용·고품질의 비현실적인 발주자 편의의 저가낙찰제와 현실성 없는 표준품셈 등은 우리 스스로가 인재를 자초하는 배경이며, 하도급업체를 옹호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 등은 인재의 기폭제들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의 슬로건 아래 각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의 건설산업 구조에서는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건설인들 스스로가 건설산업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동반자적 인식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엄중한 법 집행이 요구되며, 또한 수직적 구조를 수평·협력관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건설공사 주계약제도, 분리발주제도의 활성화 및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등의 제도적 방법 또한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저가낙찰제와 현실성 없는 표준품셈 개정을 통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여 성실시공으로 국민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산업의 정착을 통해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건설인들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화, 건설현장에서의 비효율적인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우리 전문건설인 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연구용역, “조합의 합리적인 자산운용 방안” 과제 중간보고회 개최

-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용역과제 「조합의 합리적인 자산운용 방안」(연구책임자: 김태준 선임연구원) 과제 중간보고회가 지난 10월 21일, 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동 과제는 각 공제회 및 조합의 자산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조합의 자산운용 현황을 점검한 후, 합리적인 자산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과제수행을 통해 조합 자산운용 및 체계와 관련된 중장기 로드맵을 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준조합원제도 도입에 따른 보증·용자 상품개발” 과제 중간보고회 개최

- 지난 10월 21일,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용역과제 「준조합원제도 도입에 따른 보증·용자 상품개발」(연구책임자: 박선구 책임연구원) 과제의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다.
 - 본 과제는 공제조합 환경변화 및 준조합원제도 도입경과와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준조합원 운용과 관련된 가능한 보증·용자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과제수행을 통해 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보증기관으로서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상시관리 심의위원회” 참석

- 지난 10월 16일,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표준품셈 상시관리 심의위원회”에 우리 연구원의 홍성호 연구위원이 참석해 건설공사표준품셈 상시관리를 위한 제·개정 수요조사에 따른 “2015년 표준품셈 상시관리 항목”을 심의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표준품셈 합리화 TF” 참여

- 홍성호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1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표준품셈 합리화 TF회의”에 참석하여 표준품셈 용역수행 항목별 개정방향과 더불어 항목별 실사자료 현황 등에 관해 논의했다.
 - 동 TF팀은 국토부에서 매년 개정하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표준품셈’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2012년 구성되었으며, 우리 연구원에서는 홍성호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합리적 개정방향 도출을 위해 일조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제3차 건설고용포럼위원회” 발제

- 지난 10월 2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건설고용포럼위원회에서 우리 연구원의 박광배 연구위원은 “무료취업지원센터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피력했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3억→4억으로 확대, 추후 7억까지 늘리기로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전문건설사가 원도급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사업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적격심사기준 개정 등을 거쳐 7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종합과 전문 건설사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구간’이 단계적으로 신설된다고 밝혔다.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지난해 12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진 과제로 선정되었다. 지난 4월,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전문업체와 종합업체간 이견으로 3개월 조정기간을 걸친 끝에 당초 계획보다 대폭 수정해 확정되었다.

〈 주요내용 〉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
 - 다만,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 등을 정비한 후 추진
 - 이와 함께,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3억원 미만)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연내 우선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하도급분쟁조정 신고대상 범위 확대)

-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쟁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안에 대해 제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

-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가 분쟁조정 대상이었으나,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1조 5천억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되어, 종전에 약 2.5배 가량 확대
 - *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기업의 연간매출액은 약 6천억원 수준임
- 하도급대금·선금금지급,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분쟁조정 성격이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인 대금관련 사건은 원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분쟁조정을 통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 공정위 조사 개시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를 완료한 경우, 하도급법상 제재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종합심사낙찰제 도입)

-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없애고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하도급법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그동안 덤핑낙찰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저가 하도급 등의 폐단을 초래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해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종합심사낙찰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 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 또 입찰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시 약속한 대로 일정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며,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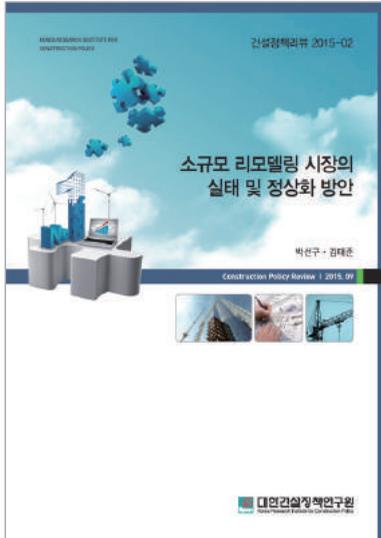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법률자문 지원 서비스 확대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국 권역별 자문번호사를 통해 조합원에 대한 법률자문 채널을 확충하여, 조합원에 대한 법률자문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 서울, 부산, 창원, 대구, 대전, 청주, 광주 7개 권역에 13명의 권역별 자문번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 각 거래지점을 통해 상담예약 및 자료준비를 문의하면 된다.
- 조합은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그동안 제공해온 조합 사내번호사 및 본사 법무팀을 통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조합원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원도급사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법령위반 행위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의 실태 및 정상화 방안



-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규모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에 의해 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 결과 무자격 사업자의 난립으로 계약 불이행, 부실시공, 하자분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이에 공동주택 등의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시장규모와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함.
 - 이를 위해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고, 무자격 리모델링 공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각종 사례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건전한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 동 연구결과는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시장규모 등에 대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지자체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주요내용 〉

-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시장규모 추정
 - 리모델링 개념,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 분류, 시장규모 추정
-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 실태
 - 공사 계약실태, 공사 피해실태
 - 피해사례 및 유형
-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 문제점 및 정상화 방안
 - 문제점
 - 무자격 사업자의 공사 수행
 - 시공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미흡
 - 시장 정상화 방안
 - 지자체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통한 적법 건설업자 시장진입 활성화
 -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자 보증지원